

광주지방법원 2018. 9. 14 선고 2017가단51089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수

$$\text{II} \mid \quad \perp \text{ B}$$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서종표

변론종결 2018. 8. 17.

판결 선고 2018. 9. 14.

주 문

1. 피고는 1/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,

가. 전남 장성군 C 대 407m² 중 별지 도면 표시 표, ㅌ, ㅋ, ㆁ, ㅈ, ㅊ, ㅌ, ㅎ, ㅍ의 각 점을 차례로

연결한 선내 (가)부분 35㎡, D 전 47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바,ㅎ,ㄱ1,ㅇ1,ㅅ1,ㅁ1의 각 점을

2.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4m², E 전 63m² 중 별지 도면 표시 ㅅ,ㅇ,ㅅ,ㅂ,ㅁ,ㅅ의 각 점을 차례로

연결한 선내 (다)부분 3m² 및 ㄱ, ㄴ, ㄷ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4m² 지상에 있는 각

건물을 철거하고,

나. 위 (가)부분 35㎡, (나)부분 4㎡, (다)부분 3㎡, (라)부분 4㎡를 인도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1/6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, 주문 제1의 가. 나.항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5. 5. 18. 전남 장성군 C 대 407㎡, D 전 476㎡, E 전 63㎡(이하 ‘원고 토지’라 한다)를 각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.

망 F은 1979년경 원고 토지에 인접한 G 대 195㎡ 및 H 전 2,793㎡(이하 ‘피고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, 1988. 10. 27. 사망하였고,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은 1/7이다.

나. 피고 토지 지상의 건물이 원고 토지 중 전남 장성군 C 대 407㎡ 중 별지 도면 표시

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, ㉥, ㉦, ㉧, ㉨, ㉩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35㎡, D 전 476㎡ 중 별지

도면 표시 ㉪, ㉫, ㉬, ㉭, ㉮, ㉯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4㎡, E 전 63㎡ 중 별지 도면

표시 ㉰, ㉱, ㉲, ㉳, ㉴, ㉵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3㎡ 및 ㉶, ㉷, ㉸, ㉹의 각 점을 차례로

연결한 선내 (라)부분 4㎡(이하 ‘침범부분’이라 한다)만큼 침범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, 2, 4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, 피고는 자신의

상속분인 1/7 지분에 관하여 원고 토지의 침범부분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상속분이 1/6 지분임을 전제로 1/6 지분에 관하여 위 철거 및 인도를 구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속분이 1/6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침범부분 철거시 피해가 큰 반면 침범부분이 원고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적으므로 원고가 그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,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,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데에만 목적이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관

감 정 도

